

	<h2 style="margin: 0;">LIFECODI센터규정</h2>	규정번호	3-731
		제정일자	2023.09.01
		개정일자	-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LIFECODI센터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성인학습자 평생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LiFE CODI 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(LiFE : 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, CODI: Career Opportunity Development Initiative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
2. 성인학습자 평생교육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이해 제고 및 참여 유도
3.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수학습 방법 개발 및 지원 연계
4. 성인학습자 대학생활 및 학업문제 해결 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연계
5. 성인학습자 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연계
6. 성인학습자의 진로, 취·창업 역량강화 교육 연계
7. 학습이력 관리 및 경력 개발 지원 연계
8. 그 밖에 성인학습자 지원에 관한 사항

제2장 조직 및 구성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, 센터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연구교수 및 연구원) ① 센터에는 연구업무 수행을 위해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교수 및 연구원은 연구과제에 대한 진행과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.

③ 연구교수 및 연구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관계규정에 따른다

제5조(직원 및 조교)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해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사무직원 및 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LiFE CODI 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교무처장, 산학협력처장, 평생교육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10인 내외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LiFE CODI 센터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2. 센터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기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0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제12조(비밀유지)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3조(소요경비)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연구비, 수당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보 칙

제14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